##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7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민병덕·김남근·김재원

이강일 · 장철민 · 박희승

천하람 • 이해민 • 이용우

강준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 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
  -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은 천재지변・전시・사변・내
	<u>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u>
	<u>가비상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u>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
	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
	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
	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
	<u>할 수 있다.</u>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
	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